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27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문진석・이건태・윤종군

김태년 · 김윤덕 · 강준현

이연희 • 전용기 • 이정문

손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채 위험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 되면서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 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수급인 과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 령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 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극 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 제34조제10항 신설, 제68조의3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 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로, "시스템을"을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을"로, "이 항"을 "이 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 여 수령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 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8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9항
·제10항 및 제68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
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	⑨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u>공사는 제외한다)를</u> 도급받은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
<u>시스템을</u> 이용하여 공사대금	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을-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	
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u>이 항</u> 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u>이 조</u>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_	-		_	-	-	-	-	-	-	_	-	-	_	-	-	_	-	-	-	-	-	-	-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항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 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 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 ① ~ ⑥ (생 략)

<신 설>

있다.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 ⑥ (현행과 같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 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 우(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 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